

국제회의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문화관광부 국제관광팀 나경 환

I. 서론

국제회의산업은 관광, 레저, 숙박, 유흥, 식음료, 교통, 통신산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촉진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포괄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확충과 국제회의의 유치 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국제회의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국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1998년 ‘1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2003년~2004년에 걸쳐 관련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정책적 지원체계와 지원내용을 강화한 바 있다. 2006년 5월에는 2010년 세계 12

위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담은 ‘제2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2005년 10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귀포시 등 4개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였고, 2006년 9월에 서귀포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들이 있지만 ‘국제회의도시’ 지정만큼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회의도시는 전문 국제회의시설 보유지역이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국제회의에 관한 상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회의 관련단체나 민간기구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요구되는 공신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국제회의도시 개념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국제회

●●● 국제회의 산업도시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하며, 이는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 기준은 동 법률의 시행령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지정대상 도시안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 당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②지정대상 도시안에 숙박시설, 교통시설, 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 지정대상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등이다. 즉, ‘국제회의도시’란 회의·전시·숙박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국제적인 회의의 연속적인 개최가 가능하며, 주변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회의 참가자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서 국제회의산업을 집중육성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증대

국제회의도시에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대규모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서울 집중화 현상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회의도시는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를 타 도시로 분산시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제회의

도시는 전문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제회의를 개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므로,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 1인당 지출액이 2.4배정도 많으므로 해당 지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지역별 특화된 국제회의 유치

국제회의도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이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회의가 가능한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간의 과당경쟁을 감소시켜 국제회의산업을 건실하게 발전하도록 한다.

국제회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국제회의도시는 세계 국제회의 시장에서의 ‘컨벤션시티’, 즉 전문화된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국제회의 유치시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하여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발전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과 혜택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

국제회의도시로서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국제회의도시로서 현대적인 국제회의시설 및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풍부한 자연 관광자원과 함께 문화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탄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IV. 해외 사례

일본은 1994년 제정된 컨벤션법에 기초하여 국제회의장 시설, 숙박시설 등의 하드웨어와 컨벤션 유치 추진기구 등의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건을 갖춘 도시를 ‘국제회의 관광도시’로 지정(현재 50개소)하고, 그 곳을 중심으로 진흥책을 강구함으로써 지방도시에

있어서의 컨벤션산업 진흥과 이를 통한 전국적인 컨벤션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회의도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태국·필리핀 등이며 실제로 지역 관광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회의도시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프랑스·독일·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제회의 개최 10위권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 아시아 3국의 국제회의도시 사례 비교 〉

구 분	한 국	일 본	싱 가 포 르
기 분 방 향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도시 집중 육성 - 지역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한 지방의 국제화 및 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도시의 국제화 추진 - 타 아시아 국가의 적극적인 컨벤션 유치 진흥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도모	-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부각시키고자 함 - 글로벌스탠다드에 의한 국가 산업 발전, 기술기반의 혁신을 조장하며 메가 이벤트로의 발전 추구
지 정 요 건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심의 - 국제회의시설, 숙박·교통 및 관련 산업 육성계획 있을 것 - 해당도시 및 주변 관광자원이 있을 것	- 국제회의시설과 관련 시설 및 관광자원 - 국제회의 추진 체계가 갖추어 있을 것	없 음
지 원 내 용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우선 지원 * 기본조건에 부합된 차별지원	- 기부금모금 교부금 교부 제도 시행 (민간·법인체에 의함) - 정보수집 및 제공 - 공동홍보 및 연락망 구축	- 인적자원 및 연관산업의 유치 시 세금 인센티브 혜택 - 다양한 프로모션 프로그램으로 관련기관 및 기획자, 참가자에 혜택 부여
관련기관 관계	- KTO 및 서울, 대구, 부산, 제주에 CVB 설립운영	- JNTO 및 각 국제회의도시내 자체 CVB 운영	- STB, SCB, SACEOS, TDB 등을 구성, 전문 전시 및 국제회의 기획 및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호네트워크 형성
컨벤션 센터와의 관계	- COEX, BEXCO, EXCO, ICC 등의 설립으로 국제 회의도시 지정 유도	- 컨벤션법에 의거, 컨벤션센터 및 관련시설 요건을 갖춘	- SICEC(민자투자) - SICEC, Expo center (정부투자)
개 최 건 수 (UA)	- 국가별 개최건수 2005년 : 185건 (14위) 2004년 : 164건 (17위) 2003년 : 160건 (18위) 2002년 : 123건 (20위) 2001년 : 134건 (18위) - 도시별 개최건수 (서울) 2005년 : 103건 (9위) 2004년 : 109건 (10위) 2003년 : 87건 (15위) 2002년 : 81건 (15위) 2001년 : 107건 (8위) 2000년 : 74건 (20위) 1999년 : 65건 (24위) 1998년 : 43건 (37위)	- 국가별 개최건수 2005년 : 168건 (17위) 2004년 : 206건 (13위) 2003년 : 219건 (13위) 2002년 : 232건 (13위) 2001년 : 215건 (12위) - 도시별 개최건수 (도쿄) 2005년 : 56건 (25위) 2004년 : 47건 2003년 : 44건 2002년 : 43건 2001년 : 46건 2000년 : 53건 1999년 : 63건 1998년 : 59건	- 국가별 개최건수 2005년 : 177건 (15위) 2004년 : 156건 (18위) 2003년 : 122건 (21위) 2002년 : 137건 (18위) 2001년 : 126건 (19위) - 도시별 개최건수 2005년 : 177건 (4위) 2004년 : 156건 (5위) 2003년 : 122건 (6위) 2002년 : 137건 (5위) 2001년 : 126건 (5위) 2000년 : 124건 (5위) 1999년 : 140건 (5위) 1998년 : 131건 (6위)

V. 국제회의도시 육성을 위한 향후 과제

가.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 구체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국제회의도시 지정기준은 다소 모호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즉 국제회의시설의 규모와 부대시설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동법 시행령에서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하였는 바, 전문회의시설 1개소 이상, 또는 준회의시설을 2개소 이상 갖춘 도시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준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심의시 법령상의 기준 이외에도 각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및 계획,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확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전담조직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할 능력을 가진 지역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2005.10월, 2006. 9월)

나. 국제회의도시 취소 및 평가

국제회의도시 지정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 후에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계획 추진여부, 국제회의 유치 활동 및 개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국제회의도시로 재지정 및 취소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 3항에서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취소를 "국제회의 도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천재지변을 통하여 시설 및 관광자원의 훼손이 있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어 타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제회의도시 운영 평가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제회의도시 운영실적과 잠재력 평가와 자문 등을 통하여 각 도시별 향후 개선방향 제시 및 우수 국제회의도시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다.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국제회의도시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국제회의산업 육성재원은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6년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은 약 73억원이며, 이중 국제회의도시에 대한 지원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공익법인인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숙박 등의 국제회의 관련업체들에 대하여 특별세를 부과하여 활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제회의 및 전시박람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재화 용역세를 받지 않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컨벤션센터의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함께 법·제도에 의한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은 국제회의도시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라. 중앙전담조직 및 공동 협력체제 구성

국제회의 유치활동 및 해외 홍보활동에 대

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앙전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담조직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질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회의 주최단체와 개최지역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와의 공동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서 회의 주관단체와 전담조직인 지역 CVB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된 유관기관 및 업계의 협조체제가 구축될 때 성공할 수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제2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2006-2010)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중앙 전담조직(가칭 '컨벤션진흥원') 설립은 국제회의산업 이해 당사자들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국제회의도시는 그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회의도시가 도시 마케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개최지 또는 목적지로서의 각 지역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국제회의의 주제를 특성화해야 한다.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독특한 지역별 관광상품은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최지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홍보한다. 내용적으로 차별화시키고 가격 등에서 혜택을 줌으로써 개최

지의 매력을 높여나간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전통 문화상품 개발은 물론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주제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특성화된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지정방안 강구와 함께 지역별 특성화된 부분으로 지정된 분야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타 도시의 특성화 분야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우리나라는 1996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시작한 이후 10년만에 18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14위의 국제회의 개최국(2005, UIA)으로 성장하였고, 1-2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국제회의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회의도시지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적정한 배분이 필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할 때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해당 지자체의 태도와 적극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전담조직의 설립 여부 등 제도나 시스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적인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는 국제회의의 지속 유치 및 국내외 타 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선 그 지역의 구조·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 지역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를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노력과 개발과 투자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종류나 규모의 국제회의라

도 모두 수용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편의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중앙정부·관련 업계·컨벤션센터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제회의 유치와 운영,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